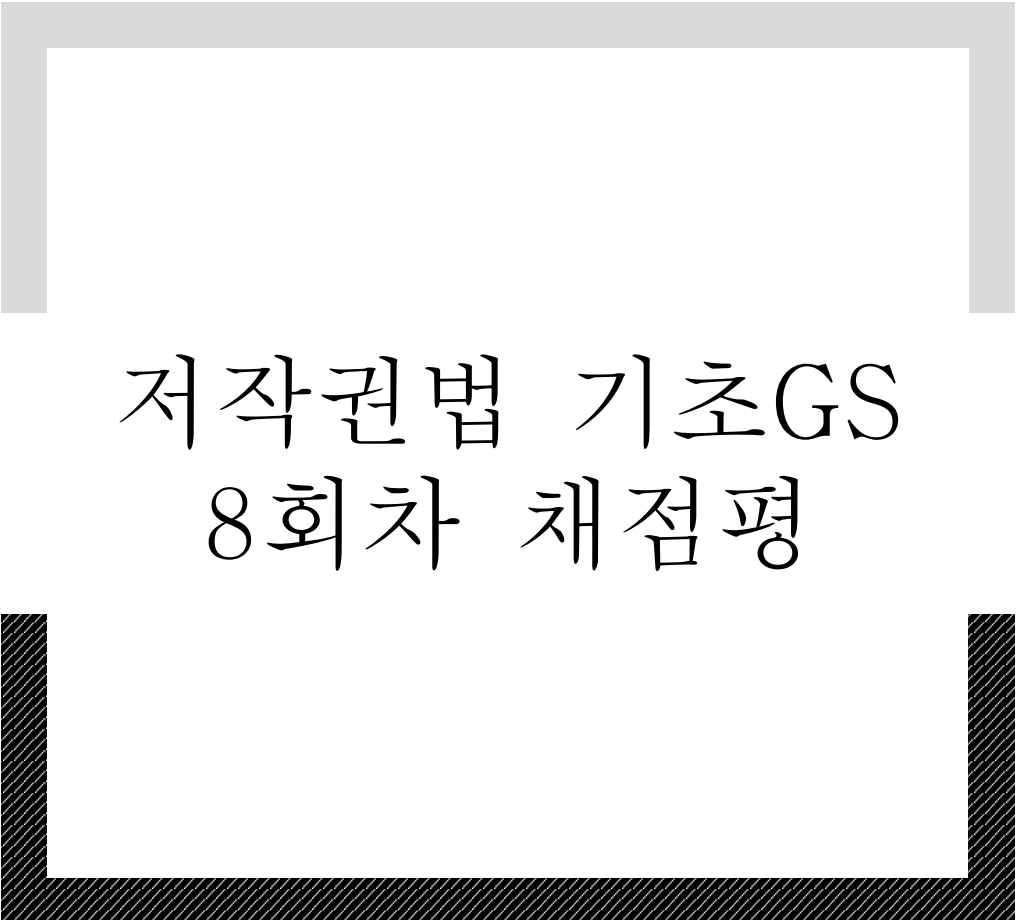


김선화 / 3월+4월 / 기초GS / 8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응시인원
556312	19.5	8.5	0	0	28	1	1.96%	51
556363	16.5	10	0	0	26.5	2	3.92%	
557828	15	10.5	0	0	25.5	3	5.88%	
550636	15	10	0	0	25	4	7.84%	
556434	16	8.5	0	0	24.5	5	9.80%	
556085	15	8.5	0	0	23.5	6	11.76%	
548731	11.5	11.5	0	0	23	7	13.73%	
556714	14	9	0	0	23	7	13.73%	
557686	16.5	6.5	0	0	23	7	13.73%	
556282	16.5	6.5	0	0	23	7	13.73%	
556948	17	4.5	0	0	21.5	11	21.57%	
559332	15.5	6	0	0	21.5	11	21.57%	
558051	13	8	0	0	21	13	25.49%	
558124	13.5	7	0	0	20.5	14	27.45%	
556524	10.5	8.5	0	0	19	15	29.41%	
556383	9.5	9.5	0	0	19	15	29.41%	
556412	10.5	8.5	0	0	19	15	29.41%	
556839	9	9.5	0	0	18.5	18	35.29%	
555744	9	9.5	0	0	18.5	18	35.29%	
556409	14.5	4	0	0	18.5	18	35.29%	
548623	7.5	10	0	0	17.5	21	41.18%	
556423	11.5	6	0	0	17.5	21	41.18%	
558614	10	7.5	0	0	17.5	21	41.18%	
556203	9.5	7	0	0	16.5	24	47.06%	
557869	11.5	4.5	0	0	16	25	49.02%	
559788	15	1	0	0	16	25	49.02%	
561039	13.5	1.5	0	0	15	27	52.94%	
556377	9	5.5	0	0	14.5	28	54.90%	
556590	12.5	2	0	0	14.5	28	54.90%	
559440	10	4.5	0	0	14.5	28	54.90%	
556301	14	0	0	0	14	31	60.78%	
556358	10.5	3.5	0	0	14	31	60.78%	
558518	7	7	0	0	14	31	60.78%	
559189	6	8	0	0	14	31	60.78%	
557074	9.5	4	0	0	13.5	35	68.63%	
557909	7.5	5.5	0	0	13	36	70.59%	
558030	6.5	6.5	0	0	13	36	70.59%	
557833	6.5	6	0	0	12.5	38	74.51%	
557810	10	2	0	0	12	39	76.47%	
558077	10	2	0	0	12	39	76.47%	
556685	9	2.5	0	0	11.5	41	80.39%	
556376	11.5	0	0	0	11.5	41	80.39%	
549662	10.5	0	0	0	10.5	43	84.31%	
556324	7	3.5	0	0	10.5	43	84.31%	
557793	10	0	0	0	10	45	88.24%	
556443	4.5	4	0	0	8.5	46	90.20%	
560897	8.5	0	0	0	8.5	46	90.20%	
559483	7.5	0	0	0	7.5	48	94.12%	
559375	5.5	1.5	0	0	7	49	96.08%	
559712	2.5	4	0	0	6.5	50	98.04%	
554788	3	2	0	0	5	51	100.00%	



저작권법 기초GS
8회차 채점평

김선화 변리사

유화정 변리사

문제 1

논점 이름

설문 1

- 甲의 영상 제작 행위를 2차적저작물작성 또는 편집저작물 작성 행위로 포섭하신 분들께는 문제에 관련된 조건이 주어진 바가 없고 해당 권리들에 대해 권리양도추정 법조문이 없는 바, 부분점수 부여하였습니다.
- 제99조 규정 범위에 다른 형식의 별개 영상물 제작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특례 판례는 창작성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답안지 판례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일반적으로 ‘영상제작자’라 할지라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하지 않으면 저작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문제에서는 甲이 저작자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으므로, 논리에 따라 B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공동저작자로 볼 수 있다고 하신 분들께 부분 점수 부여하였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설문 2

- 저작물 이용허락(제46조) 조문 쓰신 분들께 추가 점수 0.5점씩 드렸습니다.

설문 3

- 丙의 저작권법상 침해사유와 위반 사항을 나누어서 검토하고 그에 대한 벌칙 조항을 올바르게 찾아 쓰면 되는 쉬운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총 평

안녕하세요. 벌써 마지막 회차입니다. 그동안 기초 지에스 들으시면서 저작권법을 처음 접한 분들은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지시기도 하셨을 텐데, 지난 8회차 동안 저작권의 세계관에 많이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문제 1번이 길고 검토해야 하는 조항과 행위, 주장이 많아서 호흡이 길게 느껴지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제 2

권리관리정보 및 라벨

설문 1

- 권리관리정보의 의의와 그 제거 금지조항을 위반한 을의 행위에 의해 침해된 갑의 저작권을 행위별로 검토하고 그 형사상 책임을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설문 2

- 라벨이 주논점인 문제로, 라벨의 의의와 라벨 위조 및 소지 금지 조항 위반 사유에 대해 검토하고 사안에서 병의 형사상 법적 책임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총 평

문제 2번의 경우 논점이 비교적 명확하고 소설문의 개수도 적은 편이라 어렵지 않게 해결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주도 고생 많으셨고 실전에서 만나요!!

문제 - 195

I. 실용 (1)

1. 방명 행위 - 방명

(1) 방명 - 이것제 2개 제8호

방명은 공공성 중 공중이 동시에 수반하게 할 목적의 등. 영상 또는 음향 영상 등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안

Ⓜ이 ~~이~~ 이 사건 예능을 케이블 TV 채널에 방명한 행위를 방명에 해당한다.

2. 영상제작 행위 - 복제

(1) 복제 - 이것제 2개 제2호

복제는 인쇄·촬영·복사·녹음 등의 방법으로 원사건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을 고정,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안

Ⓜ이 이 사건 예능의 오작 영상을 제작한 행위는 복제에 해당한다.

3. Ⓜ 권리행위 정돈.

(1) Ⓜ의 지위 - 영상제작자 (이것제 2개 제1호)

① 영상제작자는 영상제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정제를 기획하고 책임지는 자로 Ⓜ 또는 Ⓜ의 예능 프로그램을 정제하여 기획하고 제작한 책임자를 영상제작자에 해당한다.

(2) A의 지위 - 실연자 (3항제2조 제4호)

①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구연·낭독 그 밖의 예술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실연하는 자를 말하며, 지리, 연출하는 자를 포함하고,

② A는 예술 프로그램 진행자인 실연자라 인정한다.

(3) B의 지위 - 영상저작물 저작자 (3항제2조 제2호)

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② B는 영상 촬영·편집자란 예술적 장면 구성 및 편집 방식 등 창작자인 표현해석에 기여하여 영상 저작물인 예술적 저작자라 인정한다.

(4) 영상저작자의 권리

1) 3항제 10조 제1항

영상저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방송 등을 이용할 권리이다.

2) 3항제 10조 제2항

실연자로부터 영상저작자가 양도 받는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방송 할 권리이다.

~~(4) 사안~~ 3) 사안.

① 이 사건 영상저작자로 A와 B는 각각 영상저작물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라 영상저작자라 볼 수 있어,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추정 가능하다.

(5)

② 양면 (취사비)

영상저작물로 2면 별개의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본래 창작물의



이용이 아닌 별개 새로운 영상제작을 제작이 이용한 것이므로 양 당사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b) 2권

① 甲이 예능을 케이블 TV채널에 방영한 행위는 영상제작과 甲의
권리범위 내 행위가지만, ② 甲이 예능의 핵심 장면만 취리
3분 분량의 8억 영상 제작한 행위는 甲 권리범위 밖의 행위이다.

6.5

II. (2)

1. 2 주장 1 타당성 - 적격

(1) 이용허락 - 조 제 46조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0.5

(2) 신탁계약 - 수탁권

신탁계약은 채권자 범위에 불과하므로 신탁 종료된 경우 승계 이익
절제하는 사정이 없는 한,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에
수탁자의 이용행위를 주장해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3) 사안

중요
甲의 이용행위는 2과 C가 맺은 신탁 계약 ~~2024~~ 2026. 1월 1일
이후 2026 7월 1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미 신탁관계가 종료되고
나서 이용했으므로 C의 허락받았다는 이유로 甲은 2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4) 소결

2 주장 1은 타당하다.

10.5

2. 2 주장 2 타당성

~~(1) 과잉특허 사용권한 위반 사용이 저작권 침해~~

(1) 저작물의 영상화 - 조항제 99조.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복제 배권.

각색등을 포함하여 허락한 것인 추정한다.

(2) 영상화 의미- 취(複製)

'영상화'는 특별한 변경 없이 베껴오거나 사용하는 것은 포함된다

10.5

(3) 시간

무엇 의미 음악의 영상화에 대한 허락은 받아 이를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으로 삽입한 행위는 영상화에 포함되므로 허락 행위

나 행위이다. 따라서 침해 부정된다

(4) 소결

2 주장 2는 부당하다.

10.5

II. 질문 (3)

1. 침해사유.

(1) 복제 - 조항제 2조 제 2항

~~저작이 영상화에서 상영 중인 예능은 복제 행위이며 권리가 침해~~

독립한 행위를 저작재산권상 복제에 해당한다.

0.5



(2) 진정 - 조항제 22 조 10호

주요 특정한 명칭을 인터넷 카페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복제에 해당한다.

(3) 소결

주요 특정한 명칭을 복제·전달함으로써 명칭을 저작자의
복제권, 전달권을 침해했다.

2. 위법사항

(1) 명칭을 복제 금지 - 조항제 104조의 6.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명칭을 실명 중인 명칭 실명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공연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사안

주요 명칭에 실명 중인 명칭을 복제·전달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 위반하였다.

3. 벌칙

(1) 복제권, 전달권 침해 - 조항제 136조 제1항

복제권, 전달권 침해에 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하다.

(2) 명칭을 복제 금지 위반 - 조항제 137조 제1항 제1호

주요명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하다

- 끝 -



2은 이 사건 특허 무관 소변하여 불제 행위
하였고, 원인 사인 제공 시 컴퓨터 일사행 불제
수단에는 바. 불제권 침해하였나. ^{과제 소변한 바,} ^{구제행. 소변권 행사행위} ^{소변권}

(2) 공공승인권 (제 102) 침해 ~~각~~ ~~바~~ ~~침해~~

2은 이 사건 특허 무관 소변한 것을 은제인 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는 바, 진정 행위 하여 공공승인권 **2**
침해하였나. ~~바~~ ~~침해~~ ~~하였~~ ~~나~~.

(3) 저작권관련 침해 시 허위사. 행위 (제 132) 항 1

저작권관련 침해 시 2은 아하 정영 영는 2은관련
아하 정영이 위하는 바 있다.

3 결론 ¹ 은제 저작물인

2은 4이 사건 특허 과제 소변하여 의제행위
실제권 행사행 인정되는 불제행위 만들어 은제인
이제 진정 - ~~바~~ 제 132 항 1은 ² ³ ⁴ ⁵ ⁶ ⁷ ⁸ ⁹ ¹⁰ ¹¹ ¹² ¹³ ¹⁴ ¹⁵ ¹⁶ ¹⁷ ¹⁸ ¹⁹ ²⁰ ²¹ ²² ²³ ²⁴ ²⁵ ²⁶ ²⁷ ²⁸ ²⁹ ³⁰ ³¹ ³² ³³ ³⁴ ³⁵ ³⁶ ³⁷ ³⁸ ³⁹ ⁴⁰ ⁴¹ ⁴² ⁴³ ⁴⁴ ⁴⁵ ⁴⁶ ⁴⁷ ⁴⁸ ⁴⁹ ⁵⁰ ⁵¹ ⁵² ⁵³ ⁵⁴ ⁵⁵ ⁵⁶ ⁵⁷ ⁵⁸ ⁵⁹ ⁶⁰ ⁶¹ ⁶² ⁶³ ⁶⁴ ⁶⁵ ⁶⁶ ⁶⁷ ⁶⁸ ⁶⁹ ⁷⁰ ⁷¹ ⁷² ⁷³ ⁷⁴ ⁷⁵ ⁷⁶ ⁷⁷ ⁷⁸ ⁷⁹ ⁸⁰ ⁸¹ ⁸² ⁸³ ⁸⁴ ⁸⁵ ⁸⁶ ⁸⁷ ⁸⁸ ⁸⁹ ⁹⁰ ⁹¹ ⁹² ⁹³ ⁹⁴ ⁹⁵ ⁹⁶ ⁹⁷ ⁹⁸ ⁹⁹ ¹⁰⁰ ¹⁰¹ ¹⁰² ¹⁰³ ¹⁰⁴ ¹⁰⁵ ¹⁰⁶ ¹⁰⁷ ¹⁰⁸ ¹⁰⁹ ¹¹⁰ ¹¹¹ ¹¹² ¹¹³ ¹¹⁴ ¹¹⁵ ¹¹⁶ ¹¹⁷ ¹¹⁸ ¹¹⁹ ¹²⁰ ¹²¹ ¹²² ¹²³ ¹²⁴ ¹²⁵ ¹²⁶ ¹²⁷ ¹²⁸ ¹²⁹ ¹³⁰ ¹³¹ ¹³² ¹³³ ¹³⁴ ¹³⁵ ¹³⁶ ¹³⁷ ¹³⁸ ¹³⁹ ¹⁴⁰ ¹⁴¹ ¹⁴² ¹⁴³ ¹⁴⁴ ¹⁴⁵ ¹⁴⁶ ¹⁴⁷ ¹⁴⁸ ¹⁴⁹ ¹⁵⁰ ¹⁵¹ ¹⁵² ¹⁵³ ¹⁵⁴ ¹⁵⁵ ¹⁵⁶ ¹⁵⁷ ¹⁵⁸ ¹⁵⁹ ¹⁶⁰ ¹⁶¹ ¹⁶² ¹⁶³ ¹⁶⁴ ¹⁶⁵ ¹⁶⁶ ¹⁶⁷ ¹⁶⁸ ¹⁶⁹ ¹⁷⁰ ¹⁷¹ ¹⁷² ¹⁷³ ¹⁷⁴ ¹⁷⁵ ¹⁷⁶ ¹⁷⁷ ¹⁷⁸ ¹⁷⁹ ¹⁸⁰ ¹⁸¹ ¹⁸² ¹⁸³ ¹⁸⁴ ¹⁸⁵ ¹⁸⁶ ¹⁸⁷ ¹⁸⁸ ¹⁸⁹ ¹⁹⁰ ¹⁹¹ ¹⁹² ¹⁹³ ¹⁹⁴ ¹⁹⁵ ¹⁹⁶ ¹⁹⁷ ¹⁹⁸ ¹⁹⁹ ²⁰⁰ ²⁰¹ ²⁰² ²⁰³ ²⁰⁴ ²⁰⁵ ²⁰⁶ ²⁰⁷ ²⁰⁸ ²⁰⁹ ²¹⁰ ²¹¹ ²¹² ²¹³ ²¹⁴ ²¹⁵ ²¹⁶ ²¹⁷ ²¹⁸ ²¹⁹ ²²⁰ ²²¹ ²²² ²²³ ²²⁴ ²²⁵ ²²⁶ ²²⁷ ²²⁸ ²²⁹ ²³⁰ ²³¹ ²³² ²³³ ²³⁴ ²³⁵ ²³⁶ ²³⁷ ²³⁸ ²³⁹ ²⁴⁰ ²⁴¹ ²⁴² ²⁴³ ²⁴⁴ ²⁴⁵ ²⁴⁶ ²⁴⁷ ²⁴⁸ ²⁴⁹ ²⁵⁰ ²⁵¹ ²⁵² ²⁵³ ²⁵⁴ ²⁵⁵ ²⁵⁶ ²⁵⁷ ²⁵⁸ ²⁵⁹ ²⁶⁰ ²⁶¹ ²⁶² ²⁶³ ²⁶⁴ ²⁶⁵ ²⁶⁶ ²⁶⁷ ²⁶⁸ ²⁶⁹ ²⁷⁰ ²⁷¹ ²⁷² ²⁷³ ²⁷⁴ ²⁷⁵ ²⁷⁶ ²⁷⁷ ²⁷⁸ ²⁷⁹ ²⁸⁰ ²⁸¹ ²⁸² ²⁸³ ²⁸⁴ ²⁸⁵ ²⁸⁶ ²⁸⁷ ²⁸⁸ ²⁸⁹ ²⁹⁰ ²⁹¹ ²⁹² ²⁹³ ²⁹⁴ ²⁹⁵ ²⁹⁶ ²⁹⁷ ²⁹⁸ ²⁹⁹ ³⁰⁰ ³⁰¹ ³⁰² ³⁰³ ³⁰⁴ ³⁰⁵ ³⁰⁶ ³⁰⁷ ³⁰⁸ ³⁰⁹ ³¹⁰ ³¹¹ ³¹² ³¹³ ³¹⁴ ³¹⁵ ³¹⁶ ³¹⁷ ³¹⁸ ³¹⁹ ³²⁰ ³²¹ ³²² ³²³ ³²⁴ ³²⁵ ³²⁶ ³²⁷ ³²⁸ ³²⁹ ³³⁰ ³³¹ ³³² ³³³ ³³⁴ ³³⁵ ³³⁶ ³³⁷ ³³⁸ ³³⁹ ³⁴⁰ ³⁴¹ ³⁴² ³⁴³ ³⁴⁴ ³⁴⁵ ³⁴⁶ ³⁴⁷ ³⁴⁸ ³⁴⁹ ³⁵⁰ ³⁵¹ ³⁵² ³⁵³ ³⁵⁴ ³⁵⁵ ³⁵⁶ ³⁵⁷ ³⁵⁸ ³⁵⁹ ³⁶⁰ ³⁶¹ ³⁶² ³⁶³ ³⁶⁴ ³⁶⁵ ³⁶⁶ ³⁶⁷ ³⁶⁸ ³⁶⁹ ³⁷⁰ ³⁷¹ ³⁷² ³⁷³ ³⁷⁴ ³⁷⁵ ³⁷⁶ ³⁷⁷ ³⁷⁸ ³⁷⁹ ³⁸⁰ ³⁸¹ ³⁸² ³⁸³ ³⁸⁴ ³⁸⁵ ³⁸⁶ ³⁸⁷ ³⁸⁸ ³⁸⁹ ³⁹⁰ ³⁹¹ ³⁹² ³⁹³ ³⁹⁴ ³⁹⁵ ³⁹⁶ ³⁹⁷ ³⁹⁸ ³⁹⁹ ⁴⁰⁰ ⁴⁰¹ ⁴⁰² ⁴⁰³ ⁴⁰⁴ ⁴⁰⁵ ⁴⁰⁶ ⁴⁰⁷ ⁴⁰⁸ ⁴⁰⁹ ⁴¹⁰ ⁴¹¹ ⁴¹² ⁴¹³ ⁴¹⁴ ⁴¹⁵ ⁴¹⁶ ⁴¹⁷ ⁴¹⁸ ⁴¹⁹ ⁴²⁰ ⁴²¹ ⁴²² ⁴²³ ⁴²⁴ ⁴²⁵ ⁴²⁶ ⁴²⁷ ⁴²⁸ ⁴²⁹ ⁴³⁰ ⁴³¹ ⁴³² ⁴³³ ⁴³⁴ ⁴³⁵ ⁴³⁶ ⁴³⁷ ⁴³⁸ ⁴³⁹ ⁴⁴⁰ ⁴⁴¹ ⁴⁴² ⁴⁴³ ⁴⁴⁴ ⁴⁴⁵ ⁴⁴⁶ ⁴⁴⁷ ⁴⁴⁸ ⁴⁴⁹ ⁴⁵⁰ ⁴⁵¹ ⁴⁵² ⁴⁵³ ⁴⁵⁴ ⁴⁵⁵ ⁴⁵⁶ ⁴⁵⁷ ⁴⁵⁸ ⁴⁵⁹ ⁴⁶⁰ ⁴⁶¹ ⁴⁶² ⁴⁶³ ⁴⁶⁴ ⁴⁶⁵ ⁴⁶⁶ ⁴⁶⁷ ⁴⁶⁸ ⁴⁶⁹ ⁴⁷⁰ ⁴⁷¹ ⁴⁷² ⁴⁷³ ⁴⁷⁴ ⁴⁷⁵ ⁴⁷⁶ ⁴⁷⁷ ⁴⁷⁸ ⁴⁷⁹ ⁴⁸⁰ ⁴⁸¹ ⁴⁸² ⁴⁸³ ⁴⁸⁴ ⁴⁸⁵ ⁴⁸⁶ ⁴⁸⁷ ⁴⁸⁸ ⁴⁸⁹ ⁴⁹⁰ ⁴⁹¹ ⁴⁹² ⁴⁹³ ⁴⁹⁴ ⁴⁹⁵ ⁴⁹⁶ ⁴⁹⁷ ⁴⁹⁸ ⁴⁹⁹ ⁵⁰⁰ ⁵⁰¹ ⁵⁰² ⁵⁰³ ⁵⁰⁴ ⁵⁰⁵ ⁵⁰⁶ ⁵⁰⁷ ⁵⁰⁸ ⁵⁰⁹ ⁵¹⁰ ⁵¹¹ ⁵¹² ⁵¹³ ⁵¹⁴ ⁵¹⁵ ⁵¹⁶ ⁵¹⁷ ⁵¹⁸ ⁵¹⁹ ⁵²⁰ ⁵²¹ ⁵²² ⁵²³ ⁵²⁴ ⁵²⁵ ⁵²⁶ ⁵²⁷ ⁵²⁸ ⁵²⁹ ⁵³⁰ ⁵³¹ ⁵³² ⁵³³ ⁵³⁴ ⁵³⁵ ⁵³⁶ ⁵³⁷ ⁵³⁸ ⁵³⁹ ⁵⁴⁰ ⁵⁴¹ ⁵⁴² ⁵⁴³ ⁵⁴⁴ ⁵⁴⁵ ⁵⁴⁶ ⁵⁴⁷ ⁵⁴⁸ ⁵⁴⁹ ⁵⁵⁰ ⁵⁵¹ ⁵⁵² ⁵⁵³ ⁵⁵⁴ ⁵⁵⁵ ⁵⁵⁶ ⁵⁵⁷ ⁵⁵⁸ ⁵⁵⁹ ⁵⁶⁰ ⁵⁶¹ ⁵⁶² ⁵⁶³ ⁵⁶⁴ ⁵⁶⁵ ⁵⁶⁶ ⁵⁶⁷ ⁵⁶⁸ ⁵⁶⁹ ⁵⁷⁰ ⁵⁷¹ ⁵⁷² ⁵⁷³ ⁵⁷⁴ ⁵⁷⁵ ⁵⁷⁶ ⁵⁷⁷ ⁵⁷⁸ ⁵⁷⁹ ⁵⁸⁰ ⁵⁸¹ ⁵⁸² ⁵⁸³ ⁵⁸⁴ ⁵⁸⁵ ⁵⁸⁶ ⁵⁸⁷ ⁵⁸⁸ ⁵⁸⁹ ⁵⁹⁰ ⁵⁹¹ ⁵⁹² ⁵⁹³ ⁵⁹⁴ ⁵⁹⁵ ⁵⁹⁶ ⁵⁹⁷ ⁵⁹⁸ ⁵⁹⁹ ⁶⁰⁰ ⁶⁰¹ ⁶⁰² ⁶⁰³ ⁶⁰⁴ ⁶⁰⁵ ⁶⁰⁶ ⁶⁰⁷ ⁶⁰⁸ ⁶⁰⁹ ⁶¹⁰ ⁶¹¹ ⁶¹² ⁶¹³ ⁶¹⁴ ⁶¹⁵ ⁶¹⁶ ⁶¹⁷ ⁶¹⁸ ⁶¹⁹ ⁶²⁰ ⁶²¹ ⁶²² ⁶²³ ⁶²⁴ ⁶²⁵ ⁶²⁶ ⁶²⁷ ⁶²⁸ ⁶²⁹ ⁶³⁰ ⁶³¹ ⁶³² ⁶³³ ⁶³⁴ ⁶³⁵ ⁶³⁶ ⁶³⁷ ⁶³⁸ ⁶³⁹ ⁶⁴⁰ ⁶⁴¹ ⁶⁴² ⁶⁴³ ⁶⁴⁴ ⁶⁴⁵ ⁶⁴⁶ ⁶⁴⁷ ⁶⁴⁸ ⁶⁴⁹ ⁶⁵⁰ ⁶⁵¹ ⁶⁵² ⁶⁵³ ⁶⁵⁴ ⁶⁵⁵ ⁶⁵⁶ ⁶⁵⁷ ⁶⁵⁸ ⁶⁵⁹ ⁶⁶⁰ ⁶⁶¹ ⁶⁶² ⁶⁶³ ⁶⁶⁴ ⁶⁶⁵ ⁶⁶⁶ ⁶⁶⁷ ⁶⁶⁸ ⁶⁶⁹ ⁶⁷⁰ ⁶⁷¹ ⁶⁷² ⁶⁷³ ⁶⁷⁴ ⁶⁷⁵ ⁶⁷⁶ ⁶⁷⁷ ⁶⁷⁸ ⁶⁷⁹ ⁶⁸⁰ ⁶⁸¹ ⁶⁸² ⁶⁸³ ⁶⁸⁴ ⁶⁸⁵ ⁶⁸⁶ ⁶⁸⁷ ⁶⁸⁸ ⁶⁸⁹ ⁶⁹⁰ ⁶⁹¹ ⁶⁹² ⁶⁹³ ⁶⁹⁴ ⁶⁹⁵ ⁶⁹⁶ ⁶⁹⁷ ⁶⁹⁸ ⁶⁹⁹ ⁷⁰⁰ ⁷⁰¹ ⁷⁰² ⁷⁰³ ⁷⁰⁴ ⁷⁰⁵ ⁷⁰⁶ ⁷⁰⁷ ⁷⁰⁸ ⁷⁰⁹ ⁷¹⁰ ⁷¹¹ ⁷¹² ⁷¹³ ⁷¹⁴ ⁷¹⁵ ⁷¹⁶ ⁷¹⁷ ⁷¹⁸ ⁷¹⁹ ⁷²⁰ ⁷²¹ ⁷²² ⁷²³ ⁷²⁴ ⁷²⁵ ⁷²⁶ ⁷²⁷ ⁷²⁸ ⁷²⁹ ⁷³⁰ ⁷³¹ ⁷³² ⁷³³ ⁷³⁴ ⁷³⁵ ⁷³⁶ ⁷³⁷ ⁷³⁸ ⁷³⁹ ⁷⁴⁰ ⁷⁴¹ ⁷⁴² ⁷⁴³ ⁷⁴⁴ ⁷⁴⁵ ⁷⁴⁶ ⁷⁴⁷ ⁷⁴⁸ ⁷⁴⁹ ⁷⁵⁰ ⁷⁵¹ ⁷⁵² ⁷⁵³ ⁷⁵⁴ ⁷⁵⁵ ⁷⁵⁶ ⁷⁵⁷ ⁷⁵⁸ ⁷⁵⁹ ⁷⁶⁰ ⁷⁶¹ ⁷⁶² ⁷⁶³ ⁷⁶⁴ ⁷⁶⁵ ⁷⁶⁶ ⁷⁶⁷ ⁷⁶⁸ ⁷⁶⁹ ⁷⁷⁰ ⁷⁷¹ ⁷⁷² ⁷⁷³ ⁷⁷⁴ ⁷⁷⁵ ⁷⁷⁶ ⁷⁷⁷ ⁷⁷⁸ ⁷⁷⁹ ⁷⁸⁰ ⁷⁸¹ ⁷⁸² ⁷⁸³ ⁷⁸⁴ ⁷⁸⁵ ⁷⁸⁶ ⁷⁸⁷ ⁷⁸⁸ ⁷⁸⁹ ⁷⁹⁰ ⁷⁹¹ ⁷⁹² ⁷⁹³ ⁷⁹⁴ ⁷⁹⁵ ⁷⁹⁶ ⁷⁹⁷ ⁷⁹⁸ ⁷⁹⁹ ⁸⁰⁰ ⁸⁰¹ ⁸⁰² ⁸⁰³ ⁸⁰⁴ ⁸⁰⁵ ⁸⁰⁶ ⁸⁰⁷ ⁸⁰⁸ ⁸⁰⁹ ⁸¹⁰ ⁸¹¹ ⁸¹² ⁸¹³ ⁸¹⁴ ⁸¹⁵ ⁸¹⁶ ⁸¹⁷ ⁸¹⁸ ⁸¹⁹ ⁸²⁰ ⁸²¹ ⁸²² ⁸²³ ⁸²⁴ ⁸²⁵ ⁸²⁶ ⁸²⁷ ⁸²⁸ ⁸²⁹ ⁸³⁰ ⁸³¹ ⁸³² ⁸³³ ⁸³⁴ ⁸³⁵ ⁸³⁶ ⁸³⁷ ⁸³⁸ ⁸³⁹ ⁸⁴⁰ ⁸⁴¹ ⁸⁴² ⁸⁴³ ⁸⁴⁴ ⁸⁴⁵ ⁸⁴⁶ ⁸⁴⁷ ⁸⁴⁸ ⁸⁴⁹ ⁸⁵⁰ ⁸⁵¹ ⁸⁵² ⁸⁵³ ⁸⁵⁴ ⁸⁵⁵ ⁸⁵⁶ ⁸⁵⁷ ⁸⁵⁸ ⁸⁵⁹ ⁸⁶⁰ ⁸⁶¹ ⁸⁶² ⁸⁶³ ⁸⁶⁴ ⁸⁶⁵ ⁸⁶⁶ ⁸⁶⁷ ⁸⁶⁸ ⁸⁶⁹ ⁸⁷⁰ ⁸⁷¹ ⁸⁷² ⁸⁷³ ⁸⁷⁴ ⁸⁷⁵ ⁸⁷⁶ ⁸⁷⁷ ⁸⁷⁸ ⁸⁷⁹ ⁸⁸⁰ ⁸⁸¹ ⁸⁸² ⁸⁸³ ⁸⁸⁴ ⁸⁸⁵ ⁸⁸⁶ ⁸⁸⁷ ⁸⁸⁸ ⁸⁸⁹ ⁸⁹⁰ ⁸⁹¹ ⁸⁹² ⁸⁹³ ⁸⁹⁴ ⁸⁹⁵ ⁸⁹⁶ ⁸⁹⁷ ⁸⁹⁸ ⁸⁹⁹ ⁹⁰⁰ ⁹⁰¹ ⁹⁰² ⁹⁰³ ⁹⁰⁴ ⁹⁰⁵ ⁹⁰⁶ ⁹⁰⁷ ⁹⁰⁸ ⁹⁰⁹ ⁹¹⁰ ⁹¹¹ ⁹¹² ⁹¹³ ⁹¹⁴ ⁹¹⁵ ⁹¹⁶ ⁹¹⁷ ⁹¹⁸ ⁹¹⁹ ⁹²⁰ ⁹²¹ ⁹²² ⁹²³ ⁹²⁴ ⁹²⁵ ⁹²⁶ ⁹²⁷ ⁹²⁸ ⁹²⁹ ⁹³⁰ ⁹³¹ ⁹³² ⁹³³ ⁹³⁴ ⁹³⁵ ⁹³⁶ ⁹³⁷ ⁹³⁸ ⁹³⁹ ⁹⁴⁰ ⁹⁴¹ ⁹⁴² ⁹⁴³ ⁹⁴⁴ ⁹⁴⁵ ⁹⁴⁶ ⁹⁴⁷ ⁹⁴⁸ ⁹⁴⁹ ⁹⁵⁰ ⁹⁵¹ ⁹⁵² ⁹⁵³ ⁹⁵⁴ ⁹⁵⁵ ⁹⁵⁶ ⁹⁵⁷ ⁹⁵⁸ ⁹⁵⁹ ⁹⁶⁰ ⁹⁶¹ ⁹⁶² ⁹⁶³ ⁹⁶⁴ ⁹⁶⁵ ⁹⁶⁶ ⁹⁶⁷ ⁹⁶⁸ ⁹⁶⁹ ⁹⁷⁰ ⁹⁷¹ ⁹⁷² ⁹⁷³ ⁹⁷⁴ ⁹⁷⁵ ⁹⁷⁶ ⁹⁷⁷ ⁹⁷⁸ ⁹⁷⁹ ⁹⁸⁰ ⁹⁸¹ ⁹⁸² ⁹⁸³ ⁹⁸⁴ ⁹⁸⁵ ⁹⁸⁶ ⁹⁸⁷ ⁹⁸⁸ ⁹⁸⁹ ⁹⁹⁰ ⁹⁹¹ ⁹⁹² ⁹⁹³ ⁹⁹⁴ ⁹⁹⁵ ⁹⁹⁶ ⁹⁹⁷ ⁹⁹⁸ ⁹⁹⁹ ¹⁰⁰⁰ ¹⁰⁰¹ ¹⁰⁰² ¹⁰⁰³ ¹⁰⁰⁴ ¹⁰⁰⁵ ¹⁰⁰⁶ ¹⁰⁰⁷ ¹⁰⁰⁸ ¹⁰⁰⁹ ¹⁰¹⁰ ¹⁰¹¹ ¹⁰¹² ¹⁰¹³ ¹⁰¹⁴ ¹⁰¹⁵ ¹⁰¹⁶ ¹⁰¹⁷ ¹⁰¹⁸ ¹⁰¹⁹ ¹⁰²⁰ ¹⁰²¹ ¹⁰²² ¹⁰²³ ¹⁰²⁴ ¹⁰²⁵ ¹⁰²⁶ ¹⁰²⁷ ¹⁰²⁸ ¹⁰²⁹ ¹⁰³⁰ ¹⁰³¹ ¹⁰³² ¹⁰³³ ¹⁰³⁴ ¹⁰³⁵ ¹⁰³⁶ ¹⁰³⁷ ¹⁰³⁸ ¹⁰³⁹ ¹⁰⁴⁰ ¹⁰⁴¹ ¹⁰⁴² ¹⁰⁴³ ¹⁰⁴⁴ ¹⁰⁴⁵ ¹⁰⁴⁶ ¹⁰⁴⁷ ¹⁰⁴⁸ ¹⁰⁴⁹ ¹⁰⁵⁰ ¹⁰⁵¹ ¹⁰⁵² ¹⁰⁵³ ¹⁰⁵⁴ ¹⁰⁵⁵ ¹⁰⁵⁶ ¹⁰⁵⁷ ¹⁰⁵⁸ ¹⁰⁵⁹ ¹⁰⁶⁰ ¹⁰⁶¹ ¹⁰⁶² ¹⁰⁶³ ¹⁰⁶⁴ ¹⁰⁶⁵ ¹⁰⁶⁶ ¹⁰⁶⁷ ¹⁰⁶⁸ ¹⁰⁶⁹ ¹⁰⁷⁰ ¹⁰⁷¹ ¹⁰⁷² ¹⁰⁷³ ¹⁰⁷⁴ ¹⁰⁷⁵ ¹⁰⁷⁶ ¹⁰⁷⁷ ¹⁰⁷⁸ ¹⁰⁷⁹ ¹⁰⁸⁰ ¹⁰⁸¹ ¹⁰⁸² ¹⁰⁸³ ¹⁰⁸⁴ ¹⁰⁸⁵ ¹⁰⁸⁶ ¹⁰⁸⁷ ¹⁰⁸⁸ ¹⁰⁸⁹ ¹⁰⁹⁰ ¹⁰⁹¹ ¹⁰⁹² ¹⁰⁹³ ¹⁰⁹⁴ ¹⁰⁹⁵ ¹⁰⁹⁶ ¹⁰⁹⁷ ¹⁰⁹⁸ ¹⁰⁹⁹ ¹¹⁰⁰ ¹¹⁰¹ ¹¹⁰² ¹¹⁰³ ¹¹⁰⁴ ¹¹⁰⁵ ¹¹⁰⁶ ¹¹⁰⁷ ¹¹⁰⁸ ¹¹⁰⁹ ¹¹¹⁰ ¹¹¹¹ ¹¹¹² ¹¹¹³ ¹¹¹⁴ ¹¹¹⁵ ¹¹¹⁶ ¹¹¹⁷ ¹¹¹⁸ ¹¹¹⁹ ¹¹²⁰ ¹¹²¹ ¹¹²² ¹¹²³ ¹¹²⁴ ¹¹²⁵ ¹¹²⁶ ¹¹²⁷ ¹¹²⁸ ¹¹²⁹ ¹¹³⁰ ¹¹³¹ ¹¹³² ¹¹³³ ¹¹³⁴ ¹¹³⁵ ¹¹³⁶ ¹¹³⁷ ¹¹³⁸ ¹¹³⁹ ¹¹⁴⁰ ¹¹⁴¹ ¹¹⁴² ¹¹⁴³ ¹¹⁴⁴ ¹¹⁴⁵ ¹¹⁴⁶ ¹¹⁴⁷ ¹¹⁴⁸ ¹¹⁴⁹ ¹¹⁵⁰ ¹¹⁵¹ ¹¹⁵² ¹¹⁵³ ¹¹⁵⁴ ¹¹⁵⁵ ¹¹⁵⁶ ¹¹⁵⁷ ¹¹⁵⁸ ¹¹⁵⁹ ¹¹⁶⁰ ¹¹⁶¹ ¹¹⁶² ¹¹⁶³ ¹¹⁶⁴ ¹¹⁶⁵ ¹¹⁶⁶ ¹¹⁶⁷ ¹¹⁶⁸ ¹¹⁶⁹ ¹¹⁷⁰ ¹¹⁷¹ ¹¹⁷² ¹¹⁷³ ¹¹⁷⁴ ¹¹⁷⁵ ¹¹⁷⁶ ¹¹⁷⁷ ¹¹⁷⁸ ¹¹⁷⁹ ¹¹⁸⁰ ¹¹⁸¹ ¹¹⁸² ¹¹⁸³ ¹¹⁸⁴ ¹¹⁸⁵ ¹¹⁸⁶ ¹¹⁸⁷ ¹¹⁸⁸ ¹¹⁸⁹ ¹¹⁹⁰ ¹¹⁹¹ ¹¹⁹² ¹¹⁹³ ¹¹⁹⁴ ¹¹⁹⁵ ¹¹⁹⁶ ¹¹⁹⁷ ¹¹⁹⁸ ¹¹⁹⁹ ¹²⁰⁰ ¹²⁰¹ ¹²⁰² ¹²⁰³ ¹²⁰⁴ ¹²⁰⁵ ¹²⁰⁶ ¹²⁰⁷ ¹²⁰⁸ ¹²⁰⁹ ¹²¹⁰ ¹²¹¹ ¹²¹² ¹²¹³ ¹²¹⁴ ¹²¹⁵ ¹²¹⁶ ¹²¹⁷ ¹²¹⁸ ¹²¹⁹ ¹²²⁰ ¹²²¹ ¹²²² ¹²²³ ¹²²⁴ ¹²²⁵ ¹²²⁶ ¹²²⁷ ¹²²⁸ ¹²²⁹ ¹²³⁰ ¹²³¹ ¹²³² ¹²³³ ¹²³⁴ ¹²³⁵ ¹²³⁶ ¹²³⁷ ¹²³⁸ ¹²³⁹ ¹²⁴⁰ ¹²⁴¹ ¹²⁴² ¹²⁴³ ¹²⁴⁴ ¹²⁴⁵ ¹²⁴⁶ ¹²⁴⁷ ¹²⁴⁸ ¹²⁴⁹ ¹²⁵⁰ ¹²⁵¹ ¹²⁵² ¹²⁵³ ¹²⁵⁴ ¹²⁵⁵ ¹²⁵⁶ ¹²⁵⁷ ¹²⁵⁸ ¹²⁵⁹ ¹²⁶⁰ ¹²⁶¹ ¹²⁶² ¹²⁶³ ¹²⁶⁴ ¹²⁶⁵ ¹²⁶⁶ ¹²⁶⁷ ¹²⁶⁸ ¹²⁶⁹ ¹²⁷⁰ ¹²⁷¹ ¹²⁷² ¹²⁷³ ¹²⁷⁴ ¹²⁷⁵ ¹²⁷⁶ ¹²⁷⁷ ¹²⁷⁸ ¹²⁷⁹ ¹²⁸⁰ ¹²⁸¹ ¹²⁸² ¹²⁸³ ¹²⁸⁴ ¹²⁸⁵ ¹²⁸⁶ ¹²⁸⁷ ¹²⁸⁸ ¹²⁸⁹ ¹²⁹⁰ ¹²⁹¹

1. 특정권행사 위반사항 - 라벨 요구 권리 위반

(1) 라벨 의무 (제 22 조 2호)

특정권이 특정 권항에 따라 제정된 것임을
누가든에게 대해 특정권에 부합되거나 그러한 불합치
특정권 관련 문지이다.

(2) 라벨 의무 권리 (제 10조의5) ~~제 22 조~~ 2호

~~특정권 등의~~ ~~상당한 불합치~~ 함께 배드라는 표시
~~하는~~ ~~것이다.~~

특정권 등의 라벨을 불합치 불합치에 부합하기 위해
유리한 개별 배드 문지이고 상이하는 행위의
권리이다.

(3) 상한

특수 이 사건 통하 특정 불특시 2 알권지이
정권으로 통권지이 유리한 라벨을 부합해
정권으로 통권지이 유권 특 부합한 바, 제 10조의5
1호 위반행위에 해당하

0.5

2. 행사행위 (제 22 조 2호 2의6호)

제 10조의5 위반한 경우 관련 이하 정권 또는 권항을
이하 정권이 위반하

3. 상한

특수 통하 이 사건 통하 특정 불특시 상한지이
정권지이 정권으로 이 사건 이하 유권지이



변경한 바 제 104조의 5 본 위법 행위, 이에
대하여 제 136조 2항 중의 6은 다른 형사상 책임을
안다.

[글]

-이 하여 백-

